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34300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343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8가단476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개명 전 :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전병우, 허경아

피고, 피항소인 1. B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중철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8가단47678 판결

변 론 종 결 2021. 3. 10.

판 결 선 고 2021. 4. 28.

주 문

1.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에게, 피고 B은 67,30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63,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C의 각 항소이유는 대부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와 피고 C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일부 주장에

관하여 다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항의 첫 문단(제1, 2, 3행)을 삭제하고, 제1.라.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 제1심법원의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제1.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1) 원고는 2012년경 피고 C와 사이에 구두로 ① 원고가 서울 관악구 H 지상건물의 창호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H 공사'라 한다), H 공사는 2012. 1. 21. 완료되었다.

2) 원고는 2015년경 피고 C와 사이에 구두로 원고가 ② 안양시 만안구 M 소재 모텔의 기존 건물의 철거, 폐기물 처리, 금속 및 유리공사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공사(이하 '안양 공사'라 한다)와 ③ 화성 J, K 지상의 요양병원을 철거하기로 하는(이하 '화성공사'라 한다)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세 공사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각 공사대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3.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와 피고 C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H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안양 공사와 화성 공사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 공사의 범위와 각 공사대금채권의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실제로 안양, 화성 공사에 관하여 일정 부분 이상 공사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가 안양,

화성공사의 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각 공사대금채권의 범위는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는바, 먼저 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본다.」

○ 제1심판결 제3.나.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H 공사가 2012. 1. 21. 완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안양 공사는 2015. 7.경 완료된 사실과 화성 공사는 2017. 7. 27.부터 2017. 7. 28.까지 2일간 진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가 2018. 8.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는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가 위 각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사실은 역수 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 제1심판결 제3.나.2)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① 구두계약의 특성상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공사 완료 시 원고가 내역서를 제출하여 공사대금 액수를 상호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원고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특약이나 관습이 존재하였으므로 안양 공사와 화성 공사에 대한 각 내역서 제출일인 2015. 8. 10.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보아야 한다거나, ② 원고가 위 각 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 C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비로소 각 공사대금채권이 확정되어 원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2015. 8. 10.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공사를 완료한 후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액수를 확인한 후 대금을 청구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관습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 완료 후 내역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각 공사의 완료 무렵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이상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내역서의 작성을 지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공사 내역서 작성일인 2015. 8. 10.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3.다.1)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1) H 공사대금채권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가 당사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42755 사건에서, 피고 C가 2015. 11. 25. 'H 공사대금은 700만 원에 정리하였고, 그 중 250만 원은 지급하여 잔금 450만 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곧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8. 8.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 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 C의 이 부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위 답변서상 진술은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의 하나에 불과한데 위 소송이 원고의 소취하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피고 C의 위 진술도 함께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승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이자(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참조)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것인바, 피고 C가 위와 같이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원고에게 도달한 이상 위 소의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승인의 효과는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각 공사대금채권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위 2015가단142755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안양 공사대금은 최초 공사 금액 제시액과 상이하고, 화성 공사대금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최초 공사 금액 제시액과도 상이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채무의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답변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 C가 이 부분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3.다.2)다)항의 제6행 중 '인정할만한'을 '인정할 만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라.항(제10쪽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 C의 소송비용 부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항소심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항소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경 판사 김우현 판사 허일승

1)원고의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나, 항소심에 이르러 그 항소취지로 아래와 같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청구취지 역시 같은 범위 내에서 감축한 것으로 보인다.

2)원고는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라고 항소취지를 기재하였으나, 피고 C에 대하여는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피고 C 쌍방이 항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항소취지를 선택하여 기재한다.